

영등포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3. 2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발의일 : 2007년 3월 19일
- 회부일 : 2007년 3월 19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3**주요내용**

- 가. 제2조제1호 영업자 정의 규정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정의규정 신설 (안 제2조제1호)
- 나. 제3조제1호 기금의 조성 규정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삽입 (안 제3조제1호)
- 다. 제4조제2호, 4호, 5호, 7호, 8호 개정, 동조9호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 보수” 신설 (안 제4조)
- 라. 제7조제1호,2호,3호를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개정 (안 제7조)
- 마. 제8조제1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로 조정(안 제8조)
- 바. 제10조제1항 중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동조3항 중 “청소행정과장”은 “청소과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제1,2,3,4항)
- 사. 제11조 심의위원회 기능 신설 (안 제11조)
- 아. 제12조, 제13조 중 “심의위원회” 명칭 개정(안 제12조, 제13조)

4**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나. 합 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07. 3. 2 ~ 2007. 3. 15(13일 간)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무화와 심의사항 규정, 성과분석,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시 의회 의결 등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 다만, 수정의견은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현재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은 조례에 각호를 각각 일부만 예시하였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이는 법체계에 맞지 않고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법에서 정한 용도 7차례 개정)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으로 법령과 조례의 중복을 줄이고 신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의 예와 같이 각각 나열하지 않고 기금의 용도를

1.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2. 영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수정하고 제8호는 제3호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는

2005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9조와 “우리구 재정운영 조례” 제21조에도 관련 규정이 조정되어 입법되어 있으므로 삭제 의견이며

안 제5조제2항 기금운용의 계획은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1항에 통합하여 일부 문항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과 “우리구 재정운영조례” 제22조제2항에도 관련 규정이 조정되어 입법되어 있으므로 삭제 의견이며

제6조제2항의 “은행법”은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법령 제명 인용에 낫표를 표시하고

안 제7조 기금결산은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을 반영하여 “재무보고서” 문항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제1항은 실익을 위하여 약칭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안 제10조제3항은 실익을 위하여 “영등포구 보건소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안 제10조제3항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과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5항은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제11조제1호 “동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는 당해 자치법규를 인용 할 경우로 “동 조례” “이 규칙” 등의 문구는 사용하지 아니 함으로 “제4조의 기금용도”로 문항을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에 관한 심의사항은 조례의 중요내용으로 삭제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하며

안 제11조제2호는 기금관리법 이전에 규정된 법문으로 다른 호와 중복성으로 삭제 의견이고

수정 안 제11조제6호는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우리구 재정운영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개정안 1호를 조정하여 신설하고

안 제11조제6호는 “호” 신설에 따라 제11조제7호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은 “범위안에서”는 “범위 안에서”로 띄어쓰기를 하고 공무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행자부 예규(제208호)에 규정되고 상이하야 후단 규정은 삭제하고 그에 맞추어 “위원”은 “위촉위원”으로 하며

제14조 용자계획의 공고는 “제4제1호”만이 아닌 “제4조”의 일부에도 해당되어 “제4조제1호”를 ‘제4조’로 조정 검토하고

제15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관할지역안의”를 실익을 위하여 법문을 줄이고 띄어쓰기를 하여 “영등포구 관할지역 안의”로 하고 제18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는 실익을 위하여 “영등포구”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 제4항, 안 제11조,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6조제2항의 “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하며

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5조제2항,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제2항에서 연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경우에 사용하는 가운데점(·)을 볼릿기호(•)를 사용하여 이를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수정의견대비표”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3. 26

보고자 : 김 완 섭

붙 임 : 1. 수정의견대비표 1부
2. 관련법령 1부

〈수정의견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명: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명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u>운용·관리</u>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식품위생법</u> 」 ----- ----- ----- ----- ----- <u>관리·운용</u> -----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정의) ----- -----. 1. ----- 법 제21조제2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 -----. 2. ~ 5. (생략)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 3. (생략)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조성) ----- -----. 1. 법 제65조 및 「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 제37조 ----- 2. ~ 3. (현행과 같음) 4. ----- 영 -----	제3조(기금의 조성)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	제4조(기금의 용도) ----- -----. 1.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 -----. 1.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p>성을 위한 용자사업</p> <p>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p> <p>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p> <p>4.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p> <p>5.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p> <p>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p> <p>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p> <p>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p>	<p>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p> <p>3. (현행과 같음)</p> <p>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p> <p>5.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p> <p>6.(현행과 같음)</p> <p>7.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p> <p>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p> <p>9.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용자</p>	<p>2. 영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p> <p>3. ----- 관리·운용 ----- (현행)</p>
<p>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이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p> <p>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p> <p>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p>	<p>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1. ~ 3. (현행 삭제)</p> <p>② (현행 삭제)</p>

<p><u>받아야 한다.</u></p>	<p>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u>관리·운용</u>한다.</p> <p>②기금의 여유자금은 <u>은행법</u>에 의한 금융기관에 <u>예치·관리</u>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u>관리·운용</u> ----- ----- ②----- 「<u>은행법</u>」 ----- <u>예치·관리</u>----- 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금결산) 구청장은 <u>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u>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u>기금결산보고서</u>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u>기금의 결산 및 분석에 관한 서류</u></p> <p>2. <u>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u></p> <p>3. <u>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u></p>	<p>제7조(기금의 결산)----- ----- ----- ----- ----- 1. <u>기금운용계획안</u></p> <p>2. <u>기금의 성과분석 및 재무보고서</u></p> <p>3. <u>기금결산보고서 및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안</u></p>	<p>제7조(기금결산) -----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u>기금결산보고서</u>를 작성하여 <u>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u> ----- 1. ~ 3 (현행 삭제)</p>
<p>제8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u>효율적 운용·관리</u>를 위하여 <u>기금운용관</u>과 <u>기금출납원</u>을 둔다.</p> <p>1. <u>기금운용관</u> : <u>보건소장</u></p> <p>2. <u>기금출납원</u> : <u>보건위생과장</u></p> <p>②<u>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u> 규정은 <u>기금운용관</u>과</p>	<p>제8조(회계공무원) ①----- ----- ----- ----- ----- 1. <u>기금운용관</u> : <u>보건위생과장</u></p> <p>2. <u>기금출납원</u> : <u>식품위생담당주사</u></p> <p>② 「<u>지방재정법</u>」 중 <u>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u> 규정은 <u>기금운용관</u>에게, <u>지출원과 출납원에</u></p>	<p>제8조(회계공무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③ (생략)</p>	<p>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u>수입·지출·출납·보관</u>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u>관리·처분</u>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p>		<p>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 ----- <u>수입·지출·출납·보관</u> ----- ----- <u>관리·처분</u> ----- -----.</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기금운용심의회</u></p> <p>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u>(이하 “<u>심의회</u>” 라 한다)를 둔다.</p> <p>②<u>심의회</u>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u>10인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영등포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예산과장, <u>청소행정과장</u>, 보건위생과장 2. <u>식품위생업과</u>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u>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u> 4. 동장 <p>④<u>심의회</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소관업무 담당주사</u>가 된다.</p> <p>⑤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u>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u>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u></p> <p>제10조(<u>기금운용심의위원회</u>) ① ----- ----- ----- <u>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u>(이하 “<u>심의위원회</u>” 라 한다)를 둔다.</p> <p>②<u>심의위원회</u> ----- ----- <u>10인 이내</u> -----.</p> <p>③위원장은 영등포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예산과장, <u>청소과장</u>, 보건위생과장 2. <u>식품위생분야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자로서</u> 구청장이 <u>심의위원회</u> 구성원의 3분의1 이상 임명 또는 위촉된 자 <p>④<u>심의위원회</u> ----- ----- <u>식품위생담당주사</u>로 한다.</p> <p>⑤제3항제2호 의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u></p> <p>제10조(<u>기금운용심의위원회</u>) ① ----- ----- ----- <u>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u>(이하 “<u>위원회</u>” 라 한다)를 둔다.</p> <p>②<u>위원회</u>----- ----- <u>10인 이내</u> -----.</p> <p>③-----<u>보건소장</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안과 같음) 2. <u>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u> 구청장이 위촉한 자 3. ~ 4. (현행 삭제) <p>④<u>위원회</u> ----- ----- <u>식품위생담당주사</u>로 한다.</p> <p>⑤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다. ③<u>심의회의</u>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③<u>심의회</u> ----- -----.</p>	<p>③<u>위원회</u> ----- -----.</p>
<p>제14(용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용자총액·용자한도·용자조건·용자절차</u> 등의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4(용자계획의 공고) ----- 제4조 ----- ----- ----- <u>용자총액·용자한도·용자조건·용자절차</u> ----- -----.</p>
<p>제15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관할지역</u>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u>단란주점·유흥주점</u>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용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p>		<p>제15조(용자대상) ----- <u>영등포구 관할지역 안의</u> ----- ----- <u>단란주점·유흥주점</u> ----- -----.</p>
<p>제16조(용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생략)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용자대상 적격자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u>심의회</u>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16조(용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위원회</u> -----. 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용자금의 대하)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대하하여 주는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u> 등 필요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와 금융기관</u>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p>		<p>제18조(용자금의 대하) ① (현행과 같음) ②----- <u>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u> ----- <u>영등포구와 금융기관</u> 간 ----- -----.</p>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4·3·16>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3·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를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위생등급)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1.12, 2002.8.26, 2005.1.27>

② - ④ (생략)

제65조 (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2조·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등으로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5.1.27>

⑤제1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귀속방법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 2005.1.27>

⑥시·도지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71조 (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5.12.29, 2000.1.12>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88.12.31, 2002.8.26>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 1995.12.29, 2000.1.12, 2002.8.26, 2005.1.27, 2006.12.28>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8.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2000.1.1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기금사업<개정 2005.7.27>) ①법 제71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9.7.11, 1994.12.31, 1996.10.14, 1999.11.13, 2000.7.27, 2003.12.18, 2005.7.27>

1.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2의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2의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2의4.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4. 시·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한 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6.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6의2. 식품산업진흥사업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당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13, 2000.7.27>

제43조 (기금의 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0.7.27>

③시·도지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④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0.7.27>

⑤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7.27>

⑥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7.27>

⑦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0.7.27>

[전문개정 1999.11.13]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표시"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4. "광고"라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5. "영업"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상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

⑤시·도지사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